



# 성동구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변경처분)

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징금 252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업종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8627	업소명	짜태앤노가리
영업자	이태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30(성수2가)		
위반내용	신고된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영업 2차				
처분	기존	과징금 252만원 부과(영업정지 7일에 같음)			
	변경	영업정지 7일(2015.1.1. ~ 2015.1.7.까지)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주무관 **최병희** 식품위생팀장 **정창훈** 보건위생과장 **정주섭** 보건소장 12/26 代정주섭

협조자